

의안번호	2201769
의 퇴 인	이헌승 의원
회 답 일	2024.8.26.
추 계 번호	24E17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장교 및 부사관 등에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5년간 총 1,451억원(연평균 2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5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연간 세수 감소액의 1/2만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
 - 세수효과는 시점별 초급간부 인원 규모 및 급여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 구축상 한계로 대위 및 중사 등 계급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소추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39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134	-324	-328	-331	-334	-1,451	-290

주: 2025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므로, 연간 세수 감소액의 절반만큼 세수감소효과 발생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제3항 (비과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의무복무기간 ¹⁾ 중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 1)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장기복무장교: 10년(5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2. 해군 또는 공군 장교로서 비행자격 취득자 중 해군사관학교 및 공군사관학교 졸업자는 15년, 이외는 13년(5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3. 단기복무장교: 3년, 단 육군3사관학교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자는 6년
 4. 준사관: 5년, 단 필수 기술분야 종사자는 10년(7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5. 장기복무 부사관: 7년, 단 필수 기술분야 종사자는 10년(7년차 1회 전역 지원 가능)
 6. 단기복무 부사관: 4년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항(비과세소득)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추계기간으로 설정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받는 급여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 개정안에 연말에 통과되어 2025년 하반기(2025.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
- 세수효과 추계의 대상은 개정안의 취지 및 자료의 취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의무복무기간 5년 이내인 소위, 중위 및 하사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로 한정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개정안은 초급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받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
 - 초급간부에 대한 법령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통상 의무복무기간 5년 이내인 소위·중위·대위 및 하사·중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준사관(준위) 및 장성·영관의 장교와 상사 이상의 부사관²⁾을 제외
 - 대위 및 중사 계급에는 초급간부와 초급간부가 아닌 사람(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과 5년을 초과한 사람)이 혼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하여 추계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위 및 중사 또한

2) 「군인사법」

제3조(계급) ①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3. 21.>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②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

③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에 따른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장교 및 부사관 등의 연차별 복무기간에 따른 인원 및 월평균 급여자료 등이 필요하나, 국방부는 대위 및 중사계급에 대하여 초급간부 여부를 구분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

□ 「국세통계연보」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유효세율(결정세액/총급여)과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계급별 급여 지급인원 및 월평균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비과세 신설 시의 세수효과 추계

- 계급에 따른 장교 및 부사관 등의 1인당 연평균 소득액에 총급여구간별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1인당 소득세수 변화분을 구한 후,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계급별 인원수를 적용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추계기간 동안 「국세통계연보」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에 따른 총급여규모별 유효세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

- 동일한 총급여 구간에 속한 경우 유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추계기간 동안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는 최근 3개년(2022~2024) 연평균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인원은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초급간부 연평균 축소율에 따라 각각 변동하는 것으로 전제

- 최근 3개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으로 연평균 1.9%임
 - 일부 저연차 초급간부의 경우 2024년 봉급 등이 추가로 인상되었으나, 초급간부의 연차별 인원 관련 자료의 구득에 한계가 있어 추계에 반영하지 않음
-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2028년 말까지 초급간부 인원은 연평균 약 0.91%씩 감축 예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원 및 급여 현황) 2023년 기준 급여를 지급받은 중위·소위 및 하사는 5.7만명 수준이며 1인당 평균 급여는 신분 및 계급별로 3,029만~3,775만원 수준

[표 2] 신분 및 계급별 급여 지급 인원 및 연평균 급여 (단위: 명, 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연평균 급여	인원	연평균 급여	인원	연평균 급여
장교	중위	14,988	3,542	14,594	3,678	14,116	3,775
	소위	6,569	2,324	6,378	2,954	6,090	3,029
부사관	하사	45,359	3,125	43,021	3,252	37,186	3,423

주: 1) 5년 이내 복무자들에 대한 계급별 급여지급 개월 수를 이용하여 작성된 연평균 급여
 2) 휴직 및 사고인원은 제외
 3) 연중 진급 인원은 연도 말 해당 진급 계급 인원내 포함하여 작성됨
 4) 장기 및 단기 복무 유형 등 상세구분에 제한이 있으므로 자료 이용 및 해석에 유의 필요
 자료: 국방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유효세율) 중위·소위 및 하사가 속하는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유효세율은 1.3%로 나타남
 - 「국세통계연보」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총급여 구간별 1인당 결정세액을 1인당 총급여액으로 나누어 유효세율 산출

[표 3] 2022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유효세율

(단위: 명, 백만원)

총급여 규모	총급여		결정세액		유효세율 [(D/C)/(B/A)]
	총 인원(A)	금액 합계(B)	총 인원<C>	금액 합계(D)	
1천만 이하	2,956,243	14,500,588	2,956,243	11	0.00%
1.5천만 이하	1,335,413	16,877,900	1,335,413	1,990	0.01%
2천만 이하	1,342,962	23,753,323	1,342,962	53,219	0.2%
3천만 이하	4,172,021	105,447,846	4,172,021	576,956	0.5%
4천만 이하	3,050,476	106,273,736	3,050,476	1,390,385	1.3%
4.5천만 이하	1,113,908	47,433,741	1,113,908	1,091,792	2.3%
5천만 이하	924,506	44,027,097	924,506	1,301,937	3.0%
6천만 이하	1,442,535	79,398,501	1,442,535	3,075,333	3.9%
8천만 이하	1,819,612	126,445,430	1,819,612	6,905,400	5.5%
1억 이하	1,059,709	94,644,534	1,059,709	7,654,037	8.1%

주: 결정세액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

자료: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4-2-4)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수효과)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3년 계급별 장교 및 부사관 등 인원수에 평균 연간급여와 유효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기준 소득세수 변화분을 산출한 후, 연평균 공무원 처우개선을 및 초급간부 인원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추계 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산출

- 2023년 기준 소득세수 감소액은 중위 69.7억원, 소위 24.1억원, 하사 166.5억원 총 260.3억원으로 산출됨

[표 4]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2023년 기준)

구분		연평균 급여 (만원, A)	유효세율(B)	1인당 소득세수 감소액(C=A×B, 만원)	인원 (D, 명)	세수 감소액 (E=C×D, 억원)
장교	중위	3,775	1.3%	49.4	14,116	69.7
	소위	3,029	1.3%	39.6	6,090	24.1
부사관	하사	3,423	1.3%	44.8	37,186	166.5
합계						260.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위에서 구한 세수효과에 연평균 공무원 처우개선을 및 초급간부 인원의 연평균 변화율을 적용하여 향후 5년간의 세수효과 산출
 - 연평균 급여는 2024년의 경우 기 결정된 처우개선을(2.5%)에 따라 상승하고, 2025년 이후는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평균(1.9%)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전제
 - 초급간부 인원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연평균 초급간부 인원 감축율(0.91%)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전제

[표 5] 장교 및 부사관 등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

구분			연평균 급여 (만원, A)	유효세율(B)	1인당 소득세 감소액 (C=A×B, 만원)	인원 (D, 명)	세수 감소액 (E=C×D, 억원)
2025	장교	중위	3,943	1.3%	51.6	13,860	71.5
		소위	3,164		41.4	5,979	24.7
	부사관	하사	3,575		46.8	36,511	170.8
2026	장교	중위	4,018	2.3%	92.5	13,733	127.0
		소위	3,224	1.3%	42.2	5,925	25.0
	부사관	하사	3,643		47.7	36,178	172.4
2027	장교	중위	4,094	2.3%	94.2	13,608	128.2
		소위	3,285	1.3%	43.0	5,871	25.2
	부사관	하사	3,712		48.6	35,848	174.1
2028	장교	중위	4,172	2.3%	96.0	13,484	129.5
		소위	3,347	1.3%	43.8	5,817	25.5
	부사관	하사	3,783		49.5	35,521	175.8
2029	장교	중위	4,251	2.3%	97.8	13,361	130.7
		소위	3,411	1.3%	44.6	5,764	25.7
	부사관	하사	3,854		50.4	35,197	177.5

주: 중위의 경우 2026년 이후 소득구간이 변화(4천만원 이하 → 4.5천만원 이하)하여 유효세율 변경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451억원(연평균 29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2025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연간 세수 감소액의 1/2만큼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
 - 세수효과는 시점별 초급간부 인원 규모 및 급여 변화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료 구득상 한계로 대위 및 중사 등 계급을 추계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소추
계 가능성이 존재함

[표 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장교 및 부사관 등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 신설 (안 제12조제3호)	-134	-324	-328	-331	-334	-1,451	-290

주: 2025년의 경우 하반기부터 비과세 효과가 발생하므로, 연간 세수 감소액의 절반만큼 세수감소효과 발생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신홍철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홍철	02-6788-4745	hongfe@assembly.go.kr